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5년 8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김 성 환

●대통령령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제5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 중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3.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4.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5.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6.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7.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제22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제6호, 제7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9의2.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제22조제2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신고수리”로 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허가의 취소
7.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접수 및 검토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허가·신고 사항의 통지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2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접수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사목의2부터 사목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2	180	240	300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사의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 5	600	800	1,000
사의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 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 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 3	180	240	300
사의5.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 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 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 4 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 4	180	240	300
사의6.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 6	600	800	1,000
사의7.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 7 용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 7	600	800	1,000

별표 2 제2호카목 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8조제5항 전단”을 “법 제28조제5항 전 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타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 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의2	600	800	1,000
--	------------------------	-----	-----	-------

별표 2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하지 않은 경우 또는”을 “하지 않거나”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 의2 및 머목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의2. 법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 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 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의2	600	800	1,000
머의3. 법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이 영 제20조의3 3	법 제64조제 1항제10호의 3	600	800	1,000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서목1)의 위반행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⑯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허가”를 “허가·신고”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제조·수입·사용의 허가”를 “취급 허가·신고”로 한다.

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①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②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②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②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조·수입·판매의 허가”를 “제조·수입·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②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같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